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실시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정기 점검 등의 사항 구체화
-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월)의 후속 조치 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되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납입자본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히 하였다.

②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 조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점검할 사항을 소관에 따라 구분하고, 전송자격 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에서,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하도록 하며,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③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 퇴출

또한,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 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장호	(044-202-6660)
	통신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병희	(044-202-666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59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20792호, `25.03.18., 일부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의 구체화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 정기점검 구체화(29조의2 신설)

- 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 규정

나. 불법스팸을 방지하는 문자사업자의 퇴출 근거 마련(별표2 개정)

- 등록요건 미준수 및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마련

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를 위한 등록 요건 강화(별표3 개정)

- 문자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강화, 자본금 요건 강화, 인력 요건 명확화 등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사전적 의무를 등록 요건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eeeerttt1@korea.kr

- 팩스 : 044-202-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전화 (044) 202 - 6664,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